

대신대학교 교직원포상 규정

제 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교직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주관부서) 포상에 관한 업무는 본교 **총무처**에서 주관한다.

제 3조(포상의 종류)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공로상 --- 본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나 업적이 있는 자
2. 모범상 --- 교직원으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
3. 정년퇴직자 표창 --- 10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으로서 정년퇴직 하는 자

제 4조(포상의 방법) 포상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로상 --- 표창장과 순금 10돈 상당의 부상
2. 모범상 --- 표창장과 순금 5돈 상당의 부상
3. 정년퇴직자 포상 --- 표창패와 부상(기본 5년에 순금 2돈, 1년 초과 시 순금 1 돈 상당을 추가)

제 5조(포상대상자의 추천) ① 공로상 및 모범상의 대상자가 교원일 때는 소속학과(부)장이, 직원일 때는 소속기관장(처 · 실장, 각 부속 · 부설 기관장)이 추천한다.

② 공로상 및 모범상의 추천서에는 반드시 공적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.

③ 교무처장은 정년퇴직예정 교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**총무처장**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6조(포상의 결정) 공로상 · 모범상 및 정년퇴직자 포상은 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

제 7조(포상심사위원회)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포상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, 부총장을 보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**총무처장**이 위원장이 된다. 단, 부총장, **총무처장** 유고 시 **기획처장**을 위원장으로 보한다.

④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한 후임위원의 임기는 결원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의 두되 간사는 직원인사담당이 된다.

제 8조(포상의 시기) 포상의 시기는 정기포상과 수시 포상으로 구분한다.

1. 정기포상은 매년 개교기념일에 한다.
2. 정년퇴직자 포상은 정년 퇴직일에 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0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